

산업자문 운영 지침

제정일 2012. 10. 1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핵심 기술역량이 취약한 산업체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며, 우수한 기술역량을 보유한 전문가와 산업체를 연계하여 산업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산업자문"이라 함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직원이 산업체,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(이하 "산업체등"이라 한다)의 자문 요청에 응하여 애로기술지원(기술지도, 경영지도, 디자인지도 등) 및 컨설팅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.
2. "산업교원"이라 함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.
3. "산업자문료"라 함은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받으면서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"산학협력단"이라 한다)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.

제3조(산업교원의 활동) ① 산업교원은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전임교원 중에서 산업자문을 시행하는데 충분한 학식과 경력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교원으로 산업체의 자문 신청과 수요에 따라 산업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산업교원은 기술, 경영, 디자인, 컨설팅 등의 분야에 산업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4조(산업자문 방법 등) ① 산업체등이 산업자문을 희망하는 경우 산업체등 또는 산업교원은 산학협력단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산학협력단은 산업체등 또는 산업교원의 신청에 응하여 산업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.

③ 산업교원은 산업자문결과를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산업자문료 납부) ① 산업체등은 산업자문료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산업체등은 산업자문료(부가가치세 별도)를 책정하고 이를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자문료는 산업교원과 산학협력단의 협의를 통해 산업자문 신청시에 결정한다.

③ 산학협력단은 산업체등이 납부한 산업자문료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.

제6조(산업자문료 분배 및 지급) ① 산업자문료는 산업자문에 참여한 산업교원에게 85%를, 산학협력단에 15%를 배분하며 산업자문 보고가 완료되면 이를 지급한다.

제7조(실적평가반영) 산업자문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승진 임용 및채계약 임용시 실적 및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토록 한다.

제8조(기타사항) 산업자문 신청서와 산업자문 결과보고서 서식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12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